

위 원 회 명	평의원회
회 차	2023학년도 제2차
회 의 일 자	2023. 6. 20.(화) ~ 21.(수)
회 의 방 법	서 면

2023학년도 제2차 평의원회 회의자료

의안번호	안 건
2023-03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강원도립대학교
GANGWON STATE UNIVERSITY

(기획홍보처)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23-03
------	---------

제안일	2023. 6. 20.(화)
제안자	교학처장

I 제안이유

가. 신입생 모집상황 악화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여건과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2024학년도 학과 개편 및 학생정원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학사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함

II 주요내용

가. 학과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별표 1)

- 1) 학과 통합: 호텔관광과 25명(호텔관광과 + 항공크루즈서비스과, △25명)
·(학과 개편에 경과조치) 항공크루즈서비스과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호텔관광과 재적으로 봄
- 2) 학과 신설: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30명
·공학(계열) / 해양산업전문학사(학위종별)
- 3) 공공인재융합과 전공 분리
·사회복지과(30명),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전문학사(학위종별)
·경찰경호과(20명), 인문사회(계열), 경찰행정전문학사(학위종별)
·(학과 개편에 경과조치)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과 재적으로 봄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사회복지과 전과를 허용하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사회복지과 취득학점으로 인정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경호과 재적으로 봄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경찰경호과 전과를 허용하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경

찰경효과 취득학점으로 인정

공공인재융합과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과, 경찰경효과를 선택하여 재적

4) 기존학과 정원조정

·(증원) 바리스타제과제빵과 7명 증원(35명 → 42명)

·(감축) 해양경찰과 30명→25명(△5명), 드론융합과 35명→32명(△3명), 스마트해양양식과 25명→20명(△5명),

소방환경방재과 25명(35명→25명, △10명) * 4개 학과(△23명)

【2024학년도 개편안】

계열	2023학년도		조정 내용	2024학년도		
	모집단위	입학정원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종별 (전문학사)
합계	10개 학과	312		11개 학과	314	
인문 사회	공공인재 융합과	37	학과 분리 (증 13)	사회복지과	30	사회복지
	사회복지전공 경찰행정전공			경찰경효과	20	경찰행정
	항공크루즈서비스과	25	학과 통합 (△25)	호텔관광과	25	관광
	호텔관광과	25				
자연 과학	바리스타제과제빵과	35	증 7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2	식품
	스마트해양양식과	25	△5	스마트해양양식과	20	해양생물
공학	드론융합과	35	△3	드론융합과	32	공업
	소방환경방재과	35	△10	소방환경방재과	25	소방
	건설지적토목과	25	-	건설지적토목과	25	공업
	해양경찰과(3년제)	30	△5	해양경찰과(3년제)	25	해양경찰(항해전공) 해양경찰(기관전공)
			학과 신설	항만여촌매니지먼트과	30	해양산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0	-	레저스포츠과	40	체육

나. 교육과정에 관한사항(안 제25조제11항)

1) 공공인재융합과 경찰행정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항 삭제하며,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 전공 구분 적용

Ⅲ 참고사항

가. 의견수렴(2023. 6. 8. ~ 6. 15.) 결과: 없음

나. 교무위원회(2023. 6. 19. ~ 6. 20.) 결과: 원안의결

붙임 1.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에 대한 하단의 표를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인문사회	공 공 인 재 융 합 과	37명	공학	소 방 환 경 방 재 과	35명
	항 공 크 루 즈 서 비 스 과	25명		건 설 지 적 토 목 과	25명
	호 텔 관 광 과	25명		해 양 경 찰 과 (3 년 제)	30명
자연과학	바 리 스 타 제 과 제 빵 과	35명		드 론 융 합 과	35명
	스 마 트 해 양 양 식 과	25명			
예체능	레 저 스포츠과	40명	합계		312명

에서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인문사회	사회복지과	30명	공학	소방환경방재과	25명
	경찰경호과	20명		건설지적토목과	25명
	호텔관광과	25명		해양경찰과(3년제)	25명
자연과학	바리스타제과제빵과	42명		드론융합과	32명
	스마트해양양식과	20명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30명
예체능	레저스포츠과	40명	합계		314명

로 한다.

제25조(교육과정) 제⑪항을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 호, 2023. .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제25조(교육과정) 제11항, 별표1(전문학사 학위종별)은 202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항공크루즈서비스과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사회복지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경찰경호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과 또는 경찰경호과를 선택하여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25조제11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① (생 략)					
계 열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주간)	계 열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주간)
인문 사회	공 공 인 재 융 합 과	37명	공학	소 방 환 경 재 과	35명
	항공크루즈 서 비 스 과	25명		건 설 지 적 토 목 과	25명
	호텔관광과	25명		해양경찰과 (3년제)	30명
자연 과학	바 리 스 타 제과제빵과	35명		드론융합과	35명
	스 마 트 해양양식과	25명			
예체능	레 스 포 츠 과	40명	합계		312명

개 정 안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① (현행과 같음)					
계 열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주간)	계 열	설 치 학 과	입학정원 (주간)
인문 사회	사회복지과	30명	공학	소 방 환 경 재 과	25명
	경찰경호과	20명		건 설 지 적 토 목 과	25명
	호텔관광과	25명		해양경찰과 (3년제)	25명
자연 과학	바 리 스 타 제과제빵과	42명		드론융합과	32명
	스 마 트 해양양식과	20명		항 만 어 촌 매니지먼트과	30명
예체능	레 스 포 츠 과	40명	합계		314명

제25조(교육과정) ⑪ 공공인재융합과는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행정전공, 사회복지	
전공을 구분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25조(교육과정) ⑪ <삭 제>	
--------------------	--

현행

[별표 1] <개정 2009.6.15., 2011.2.24., 2015.2.26., 2016.2.18., 2017.2.21., 2017.6.30. 2019.10.12., 2020. 7. 15., 2021.8.12.>

전문학사 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학과	비고
해양생물전문학사	스마트해양양식과	
식품전문학사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경찰전문학사(항해전공) 해양경찰전문학사(기관전공)	해양경찰과	
공업전문학사	(ICT드론과), (로봇스마트팩토리과), (전기통신로봇과), (스마트시티건설과), 건설지적토목과, 드론융합과	
소방환경방재전문학사	소방환경방재과	
관광전문학사	(항공관광과), (크루즈승무원과), (항공크루즈서비스과), 호텔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보육과),(유아안전보육과)	
경찰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인재융합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개정안

[별표 1] <개정 2009.6.15., 2011.2.24., 2015.2.26., 2016.2.18., 2017.2.21., 2017.6.30. 2019.10.12., 2020. 7. 15., 2021.8.12. 2023.00.00.>

전문학사 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학과	비고
해양생물전문학사	스마트해양양식과	
식품전문학사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경찰전문학사(항해전공) 해양경찰전문학사(기관전공)	해양경찰과	
공업전문학사	(ICT드론과), (로봇스마트팩토리과), (전기통신로봇과), (스마트시티건설과), 건설지적토목과, 드론융합과	
해양산업전문학사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소방환경방재전문학사	소방환경방재과	
관광전문학사	(항공관광과), (크루즈승무원과), (항공크루즈서비스과), 호텔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보육과), (유아안전보육과)	
경찰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인재융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경찰행정전문학사	경찰경호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강원도립대학교 학칙(개정안)

(제정) 1998-03-01 학칙 제001호

(개정) 2023-01-10 학칙 제623호

(개정) 2023-00-00 학칙 제000호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과 및 입학 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6., 2009.2.26., 2009.12.10., 2011.2.24., 2013.1.18., 2014.2.28., 2015.2.26., 2016.2.18., 2016.4.25., 2017.2.21., 2017.6.30., 2019.10.2., 2020. 7. 15., 2021.8.12., 2023.00.00.>

계 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계 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주간)
인문사회	사 회 복 지 과	30명	공학	소 방 환 경 방 재 과	25명
	경 찰 경 호 과	20명		건 설 지 적 토 목 과	25명
	호 텔 관 광 과	25명		해 양 경 찰 과 (3 년 제)	25명
자연과학	바 리 스타 제 과 제 빵 과	42명		드 론 융 합 과	32명
	스 마 트 해 양 양 식 과	20명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30명
예체능	레 저 스포 츠 과	40명	합계		314명

② 학과설치 및 폐지 등 학과개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교가 따로 정한 대학교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18., 2016.4.25.>

제25조(교육과정) ⑪ <삭제 2023.00.00.>

[별표 1] <개정 2009.6.15., 2011.2.24., 2015.2.26., 2016.2.18., 2017.2.21., 2017.6.30. 2019.10.12., 2020. 7. 15., 2021.8.12. 2023.00.00.>

전문학사 학위종별

학위종별	해당학과	비고
해양생물전문학사	스마트해양양식과	
식품전문학사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해양경찰전문학사(항해전공) 해양경찰전문학사(기관전공)	해양경찰과	
공업전문학사	(ICT드론과), (로봇스마트팩토리과), (전기통신로봇과), (스마트시티건설과), 건설지적토목과, 드론융합과	
해양산업전문학사	항만어촌매니지먼트과	
소방환경방재전문학사	소방환경방재과	
관광전문학사	(항공관광과), (크루즈승무원과), (항공크루즈서비스과), 호텔관광과	
교육전문학사	(유아보육과), (유아안전보육과)	
경찰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전문학사	(공공인재융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과	
경찰행정전문학사	경찰경호과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과	

부칙(2023. 00. 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학과설치 및 폐지), 제25조(교육과정) 제11항, 별표1(전문학사 학위종별)은 202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항공크루즈서비스과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호텔관광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소속 재적생이 2025년도 8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사회복지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사회복지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⑤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경찰행정전공)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경찰경호과로 전과를 허용한다. 이 경우의 전과생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공공인재융합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경찰경호과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 종전의 인문사회계열 공공인재융합과 휴학생의 복학 시점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회복지과 또는 경찰경호과를 선택하여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25조제11항은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 적용한다.